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1년 12월 14일

나. 회부일자 : 2001년 1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001. 12.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법제상의 조치 등)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 환경의 21세기를 대비해 광주 서구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구역 내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제15조, 제6조, 제8조)
- 환경보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 학교, 민간환경단체장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함(제9조, 제10조, 제11조)
-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제112조)
- 지역 내 환경개선사업의 자활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제20조)
-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 규정을 마련함(제21조)
- 환경관리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근수)

-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광주서구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
-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와 주민들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언론, 학교,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환경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 수립기간과 지역환경평가제 도입 환경보존기금의

설치와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서구21위원회”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을 운영하며,
- 또한 환경보전시책의 추진 과정에 구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본 조례는 환경보전을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화·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환경의 21세기를 대비해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로써 기본목적, 구와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 관련 기관의 역할,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의 공개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우리 서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안은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안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8. 기타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의 환경시책은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관리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환경보존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솔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언론의 역할) ①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12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환경·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지구 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따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장, 민간환경단체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 및 홍보

제24조(정보의 공개)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25조(환경보전에 대한 구민참여 등)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에 광주광역시 서구 녹색서구21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와 지도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녹색서구21위원회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에 대한 건의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3. 환경분쟁의 예방
4.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제2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 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에 따른다.

제3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2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p> <p>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p>제12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p> <p>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좌 동</p>